

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경영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977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10월 16일
발 의 자 : 김경영·박기재·채유미·이정인·
최 선·송명화·이은주·이영실·
이광호·김화숙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「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 개정에 따라 법령에 따른 의무적 출자·출연 및 연례적·반복적 출자·출연 시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일정기간 정하여 출연금을 얻을 수 있도록 함.
- 본 조례 개정으로 연례적 출연동의에 따른 입법 및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 조례해석의 명확성을 기해 정책의 효과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- 이에 사전의결 실시를 위한 ‘일정기간’을 정하여, 연례적, 반복적 출자·출연에 대한 동의안 심사를 정비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입법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의3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2년마다 받도록 규정함(안 제12조 개정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, 「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의3에 따라 시장은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2년마다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재산 및 운영재원 등) ①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2조(재산 및 운영재원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「 <u>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</u> 」 제22조 <u>의3에 따라 시장은 시의회의 사전</u> <u>동의를 2년마다 받아야 한다.</u>